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12. 21.(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3차, 제6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2-65-237~240)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재허가 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KBS, MBC, SBS, 광주방송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을 명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KBS, MBC, SBS, 광주방송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에 ‘21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드렸으며,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재허가 조건 및 위반내용입니다. <가> 협찬고지 누락 관련입니다. ‘20년 재허가 시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은 협찬 받은 사실을 프로그램 내에서 3회 이상 고지 하고, 홈페이지에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동 조건과 관련하여 점검한 결과, 3회 고지사항과 관련하여 KBS 1건, MBC 5건, SBS 1건, 홈페이지 게시사항과 관련하여 KBS 4건, MBC 13건, SBS 25건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UHD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관련입니다. MBC의 경우 2019년 재허가 조건에 대해 UHD 콘텐츠에 1,393억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946억원만 집행하여 약 446억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독립적인 사외이사 미선임 관련입니다. 광주방송은 2019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복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위촉해야 하나 2021년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이후 기존 사외이사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5> 피심인 의견입니다. KBS의 경우 제작진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MBC는 협찬고지와 관련하여 제작진 단순 실수 또는 내부 프로세스 지연에 따라 발생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UHD 콘텐츠 투자 미이행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MBC의 콘텐츠 경쟁력 복원, 선택과 집중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SBS 의견입니다. 홈페이지에 7일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라> 광주방송 의견입니다. 금년 3월 주주총회 시 방송분야 전문성 관련 인사를 선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선임하지 못했고,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선임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협찬고지 누락과 관련하여 SBS의 경우 7일 기간 산정 기준을 민원처리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협찬 사실 게시와 관련하여 행정에 관한 기간 산정은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민원 처리법이 아닌 민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을 만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기간 산정 변경을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경우 KBS와 MBC는 변동이 없으며, SBS의 경우 25건에서 4건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찬 사실 공개 게시와 관련한 재허가 조건 위반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UHD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관련입니다. MBC의 경우 '20년, '21년 연속으로 UHD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달성한 점,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필요성, 지속적인 UHD 콘텐츠 투자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21년도 UHD 콘텐츠 투자 미이행금액 446억원을 '24년 말까지 집행 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 사항은 지난 4월 MBC UHD TV 재허가 사업계획 변경 시 '21년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 독립적인 사외이사 미선임 관련입니다.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지연에 따른 방송사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저하 우려, 해당 재허가 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3년 4월까지 독립적인 복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금년 말까지 시정명령 통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MBC 같은 경우에 올해 1,565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까지 대략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니까 '20년, '21년 미투자분을 전부 달성하고 상회하는 액수입니까? 아니면 내후년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년 미집행한 금액은 올해까지 집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니까 MBC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시정명령 미집행한 부분들은 다 집행하기로 계획을 제출했고, 저희가 작년도에 시정명령도 부과하였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24년까지 446억원을 이행하면 그동안 계획대로 투자가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게 되면 '21년도까지의 계획 대비 투자금액은 다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난 4월에 '22년, '23년, '24년 3개년치에 대한 투자금액을 일부 변경해 뒀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변경해서 승인한 바가 있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지상파방송사들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건인데 이 중 2021년도 UHD 콘텐츠 투자실적이 재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MBC에 대한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가 올해 4월에 이미 UHD 콘텐츠 투자계획을 완화시켜 뒀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미이행분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은 공적책무 이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이번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사무처의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상파방송사들의 조속한 조건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공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개정사항입니다. <가> 과징금 결정 구조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제점입니다. 그간 현행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감경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감경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 조사협력의 경우에는 ‘적극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 협력’한 경우만 감경 최고상한을 적용받도록 하여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5호, 자율준수의 경우에는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적용받도록 하여 이통사의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호, 재발방지의 경우에는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적용받도록 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유통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과조치입니다. 고시 개정 후 위반 사례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과조치를 정해 규제의 형평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최종안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과징금 부과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합리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어법상 이상한 데가 있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3페이지 아래 현행 6호,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오른쪽 개정안 문장에 보면 “6호 가. 해당 조치로 위반행위 재발을 실질적으로 제거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반행위 재발을 제거한다’는 것이 우리 어법상 맞지 않고 ‘방지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 나, 다가 다 “위반행위 재발을 상당부분 제거 가능한 것으로”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제거’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거’가 아니라 ‘방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발방지가 맞겠지요?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재발 우려를 제거한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명확한 표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한 번쯤 보시지요. 재발방지를 제거한다고 하니까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없애버린다는 것인데 그것이 약간 이상합니다.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자세히 보십시오. 법률안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감경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단말기유통법 감경기준에

따라서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 시 특히 추가적 가중·감경이 종종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 감경사유를 보다 구체화·세분화해서 자의적 판단의 소지를 줄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정안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 또 운영하느냐가 담당실무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만큼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목적이 통신사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만큼 사무처에서 개정안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는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보조금의 차별 금지 등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 형평성과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는 것이고, 위반행위 유형은 단순하지만 유사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과징금 산정 시 감경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과징금 감경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율 준수 및 재발방지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차등 감경기준 마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모든 규제의 기본원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알기 쉽고 구체적이며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경우 이런 원칙에 따라서 모호하거나 자의적일 수 있는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해서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원안에 동의하고 사무처에서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4쪽 경과조치에 고시 개정 후 위반사례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정해 규제의 형평성과 명확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가 기준을 높여 주거나 낮춰 줘서 실질적 이익·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조항의 경과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인데 그것을 굳이 발생 이후부터 적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전에 적용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세분화시켰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삭제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판단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을 높여주거나 낮춰주거나 하는 문제라면 형평성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인데 굳이 예전 것이라고 해서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된 문구 수정과 경과조치에 대한 변경을 포함해서 이 안건은 수정한 내용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2월 28일에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7분 폐회 】